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2-90

제출년월일 : 2022.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관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장애인 가족 지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수행기관 지정 등)

○ 추진 필요성

-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 해결 및 장애인가족의 사회적부담 등 역기능을 해소하여 장애인가족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시설 운영,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
-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일체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센터장	설치 일자	시설 설비 면적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	장현아	2017. 8. 1.	상담실: 15.30㎡ 사무실: 40.91㎡ 교육실: 56.30㎡

○ 인력현황

시설명	계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	비고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6	1	1	4	시간선택제 1명

마. 민간위탁기간: 2023.1.1.~ 2025.12.31.(3년)

바. 선정방식: 공개 모집

사. 소요예산(2022년 예산 기준)

○ 총 사업비: 193,030천원(시비 87,515천원, 구비 105,515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2022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액	산출내역
목	세목			
계		193,030 (시) 87,515 (구) 105,515	191,332 (시) 86,666 (구) 104,666	
민간 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63,030 (시) 72,515 (구) 90,515	156,600 (시) 69,300 (구) 87,300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145,030천원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1,500천원*12월=18,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0 (시) 15,000 (구) 15,000	34,732 (시) 17,366 (구) 17,366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30,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설치된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하여 안정적·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돌봄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선정방식

- 민간위탁 추진일정(안)
 - 민간위탁체 선정 방침 수립 및 성과평가 ----- 2022. 9.
 -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 ----- 2022. 10.
 - 협약체결 ----- 2022. 1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수행기관 지정 등)

-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